

영등포구청장 및 관제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

의안 번호	36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2010. 11. 17.

발 의 자 : 이재형 의원 외 4인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 및 우리 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민과 우리구 의회 의사가 구정 전반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청장 및 관제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.

2. 주요골자

- 출석기간 : 2010. 12. 10(금)
- 구성이유 : 구정질문 및 답변
- 장 소 :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
- 출석대상 : 구청장, 부구청장, 보건소장, 각 극장
- 요 구 자 : 이재형 의원 외 4인

3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제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